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운영세칙

제정 : 2016. 12. 09

개정 : 2022. 08. 05

개정 : 2023. 07. 13

담당 : 한국어교육센터 (02-950-55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이하 “본 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한국어 과정(이하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및 운영

제2조(교육과정) ① 본 센터의 한국어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규과정은 연 4학기제로 운영하며, 한국어능력(TOPIK)수준에 따른 1급부터 6급 과정의 세부과정을 둔다.(개정 2022.08.05)
2. 정규과정 수업운영은 주중(월-금) 최소 4일 10주, 5일 8주(총 수업시간 160시간~180시간)로 운영한다.(개정 2022.08.05.)(개정 2023.07.13.)

제3조(업무처리) 외국인학생의 선발 절차 및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며,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제정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관리) 외국인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관리 및 출입국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강사의 임용) ① 강사는 센터장이 임명하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및 한국어교사 자격취득자 등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08.05)

제6조(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7조(지원자격) 본 센터의 어학연수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에서 12년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 한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가능한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22.08.05)

제8조(절차) 연수생의 한국어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입학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및 출입국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1. 원서접수
2. 서류심사
3. 서류심사 결과 통보
4. 등록금 납부
5.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6.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인정서 발급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및 허가
7. 입국(신설 2022.08.05)

제9조(입학) ① 본 센터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 입학전형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제1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같은 급에서 두 번 유급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재등록할 수 없다.
- ④ 한국어과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재등록할 수 없다.(개정 2022.08.05)

제11조(수업료 반환) ① 수업료는 다음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 반환한다.

1. 수업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분 반환)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미입국, 입국금지국가, 영구귀국)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② 수강료 반환 요청 시에는 반환을 요구한 익월 이후의 수강료 전액과 아래 각 호에 의해 산정된 요구한 월의 수강료 반환액을 환불한다.

개강전	전액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환불+남은 개월 수강료 전액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1/2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불가

1. 요구한 월의 수업시간은 해당 월의 총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강료는 전체 수강료를 실제 수업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환불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환불한다.
- ④ 해외송금 환불 시 발생하는 해외송금, 해외전신수수료 제외하여 환불한다.(개정 2022.08.05)

제4장 수업 및 성적

제12조(출·결석) ① 지각 3회시에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하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결석한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05)

제13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 및 기말시험 성적, 출석, 수업참여도, 과제물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학생은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심사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③ 각 급을 이수하거나 고급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하며, 수업일수 30%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 수료가 불가하다.(개정 2022.08.05.)(개정 2023.07.13.)

제5장 진급·제적·자퇴·수료

제14조(진급) ① 진급은 출석률 70%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② 한 급을 수료한 자는 다음 급으로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③ 낙제를 했으나 다음 급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자나 월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진급이 허가될 수 있다.(개정 2022.08.05.)

④ 한국어능력(TOPIK)에 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 주관의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진급할 수 있다.(신설 2023.07.13.)

제15조(휴학) 본 센터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08.05)

제16조(제적·자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22.08.05)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 자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5. 전체 출석률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활동이 확인된 학생의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07.13.)

②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이수 및 수료) 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2022.08.05)

② 성적 미달이거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하는 경우 성적표만 발급한다.

제18조(기타) 진급은 출석률 70%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개정 2022.08.05)

제6장 장학금

제19조(장학금) 본 센터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본 센터 행정업무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8.05)

제20조(장학금의 종류) 아래 장학금 요건에 따른 지급액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근로 장학금을 두어 근로 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22.08.05)

제21조(지급중지) 장학금 대상자가 휴학, 자진 퇴학, 제적 또는 징계 될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8.0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